

제 1885 호
1995. 3. 17.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최 병 철
편집인 : 공 보 관 신 동 우
전 화 : 731-8111~3
인 쇄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 273-8111~3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3167 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2
- 고 시
제 1995-69 호 공공기관부설주차장유료운영개시 7
- 공 고
제 1995-78 호 도시계획사업(성내역주차장건설공사)설시계획안기를위한공람공고 ... 8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5. 3. 17

서울특별시시장 최병렬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167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를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로 하고 제14조의2 및 제1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된 토지가액평가서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제14조의6(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서울특별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시장이 도시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내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유료 이용시간·이용대상차량·기타 주차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율"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율"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자로써 입체식(진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

제21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3배"를 "2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를 "시장이 정하는"으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폐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의 주 차 장				
	2시간까지		2시간초과	월정기권	1회 주차		1일 주차권	월정기권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5분	1구획 15분		1구획 최초30분	1구획 15분		주간	야간
1급지	2천원	1천원	2천원	·	1천600원	800원	·	20만원	10만원
2급지	1천원	500원	1천원	·	1천원	500원	·	12만원	6만원
3급지	400원	200원	400원	·	300원	150원	·	4만원	2만원
4급지	200원	100원	·	3만원	200원	100원	2천원	1만원	·

비 고

-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적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써 3급지 및 4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1) 4대문 주변지역: 사직로·윤곡로·왕산로·다산로·왕십리길·퇴계로 및 의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
 - (2) 신촌 지역: 경의선철도·경의선철도와 대흥로를 잇는 도로·대흥로·용산선철도·양화로 및 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
 - (3) 영등포 지역: 경인로·선유로·노들길 및 여의도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
 - (4) 영동 지역: 올림픽대로·도산대로·언주로·역삼로·효령로·반포로를 연결

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 및 봉은사로·영동대로·테헤란로·삼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

- (5) 잠실 지역: 올림픽로·석촌호수길·삼학사실·잠실길·올림픽로·송파대로·신천동 7번지 11호·11번지·8호·11번지 7호를 잇는 도로·올림픽로·위례성길 및 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를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

- (6) 천호 지역: 선사로·구천면길·천호동 421번지와 길동 458번지를 잇는 도로·둔촌로·성내동 415번지와 성내동 108번지를 잇는 도로 및 풍납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

- (7) 청량리 지역: 계기로·전농로·배봉로·하정로 및 정동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

나. 2급지: 1급지·3급지 및 4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다. 3급지: 지하철관승주차장 중 상업·업무지역 인접에 있어 환승기능이 전환된

<p>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라. 4급지: 3급지물 계의한 지하철환승주 차장 또는 주거지역 중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 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 정할 수 있다.</p> <p>4.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p>	<p>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징수시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5. 시장은 자동차 10부제운행(자동차 등록 번호의 끝자리 수가 운행일자와 같은 때 에 운행하지 않는 것)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월정기권을 이용하는 차량이 10부 제운행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1회 주차요금 을 적용한다.</p>
---	---

10부제운행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	노 상 주 차 장				노 의 주 차 장				
	2시간까지		2시간초과		월정기권	1회 주차		월정기권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5분	1구획 15분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5분	1일 주차권	주간	야간
1급지	1천800원	900원	1천800원	.	1천400원	700원	.	18만원	9만원
2급지	800원	400원	800원	.	800원	400원	.	10만원	5만원
3급지	300원	150원	300원	.	300원	150원	.	3만원	1만5천원
4급지	200원	100원	.	2만5천원	200원	100원	1천500원	8천원	.

<p>6.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 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 의 5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 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 을 소지한 자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을 제4조제 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p>	<p>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 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 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 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p> <p>7. 시장은 출근시간대에 4급지 주차장에 주 차하는 카풀자동차(3인 이상 탑승한 자 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 감면시간·비율 및 대상자 동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신 설)	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된 토

현 행	개 정
<p>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생략)</p> <p>제14조의3(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생략)</p> <p>제14조의4(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폐지신고 등) (생략)</p> <p>(신설)</p>	<p>첨부된 토지가액평가서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평가금액으로 한다.</p> <p>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현행 제14조의2와 같음)</p> <p>제14조의4(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현행 제14조의3와 같음)</p> <p>제14조의5(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폐지신고 등) (현행 제14조의4와 같음)</p> <p>제14조의6(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서울특별시·자치구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시장이 도시교통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의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유효이용시간·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p>
<p>제18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자주식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구획은 세로로 연결하여 배치할 수 있되 연결되는 주차구획은 2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하되 차로와 주차구획 사이의 출입이 원활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주차장의 출입구 부근의 구조는 주차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회전반경 및 보행인의 통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p><삭제></p>

장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되, 지하철
한승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인하 조정
(별표 1).

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토
지가액 적용(제14조의2).

다.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유료화 규정
신설(제14조의6).

라. 주차용도로점용료물 인근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액의 100분
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조정(제20조).

마.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용자대상에
주차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
은 자 포함(제21조).

3. 참고사항

2. 유료 운영시간

구 분	평 일	토 요 일
동절기(11월~2월)	09:00~17:00	09:00~13:00
하절기(3월~10월)	09:00~18:00	

3. 공용개시일: 1995. 3. 20

4. 주차요금

가. 시청: 30분당 1,500원, 월정기권 8만
원

나. 구청: 30분당 1,000~1,500원 월정기
권 8만원의 범위 내에서 공영주차장
급지 및 대중교통수단 접근 용이성 등
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

5. 주차요금징수

가. 대상: 소속공무원 및 시·구청 내방차
량

나. 제외

1) 관용차량, 언론기관 로고 부착차량

가. 관제법령: 주차장법 제9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14조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필요 없음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995-69호

공공기관부설주차장유료운영개시
주차장법 제19조의3 및 서울특별시주차
장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의6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유료
운영개시함을 고시합니다.

1995. 3. 17

서울특별시장

1. 적용대상: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청의 부
설주차장

2) 일반시민-방문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시 초과시간 요금징수
1시간 초과 귀책사유가 공무원에
있을 시 주차요금면제

3) 타부처, 시·구의원, 회의참석 외부
인사 등-방문부서 확인에 의하여 무
료

6. 방치차량: 특별한 사유없이 48~72시간
이상 장기방치시 인근 견인 보관소로 이
동·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
는 차량소유주가 부담

7. 자동차 훼손·도난의 경우 배상책임

가. 주차장내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함.

나. 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함.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995-78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인가를 위한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562호(89. 12. 29)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사업(주차장)의 실시 계획 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국 주차계획 담당관(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이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공

고기간 내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3. 17

서울특별시

가. 인가신청요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사업(주차장)

(나) 명칭: 성내역주차장 건설공사

(2)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부지면적: 30,264㎡

(나) 사업규모: 공사면적 9,918.7㎡, 주차대수 320대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삼성건설(주) 대표이사 최 훈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공예정일: 95. 3

(나) 준공예정일: 96. 4

(5) 토지조서: 별첨

나. 공람의 일시 및 장소

(1) 공람일시: 1995. 3.~1995. 3(14일간)

(2)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교통국 주차계획담당관(777-9151~2)

토 지 조 서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대 장 상	편 입		
송파구 신천동 14	유	30,264	9,918.7	서울특별시	
계		30,264	9,918.7		